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제정 2002. 9.25
개정 2004. 4.20
개정 2005. 3. 2
개정 2007. 3.12
개정 2008. 3. 3
개정 2009. 2.20
개정 2010. 4.20
개정 2017. 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90조 및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방향) ①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2.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3. 경영의 투명성 확보
4.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5.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

② 제1항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사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2016. 6. 8. 개정)을 참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포함). 단,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 절차 없이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제4조(행사에부 등) ①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 2 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 1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제 5 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81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 1 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제5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7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1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운용담당임원이 결정한다. 단, 본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다.

②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4조(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영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유지)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령 제90조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